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4522	이수진의원	2024.10.4.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 후 축조심사
2204562	박해철의원	2024.10.4.	
2204592	강득구의원	2024.10.7.	
2207789	이용우의원	2025.1.23.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 후 축조심사
2211968	박홍배의원	2025.8.4.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9.12.)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 후 축조심사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5.9.19.)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를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용자대표
<신 설>	2. 근로자대표
<신 설>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신 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